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2013. 11. 21.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김 성 모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3년 11월 1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
3.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시행일('13.12.12.)에 맞춰 『직종개편』에 따른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총 정원 754명(변동없음)

-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인한 정원 조정(43명)

⇒ 일반직 증43명, 기능직 감42명, 별정직 감1명

- 기능직 6급이하 42명 ⇒ 일반직 6급 이하 42명으로 전환
- 별정직 6급상당 1명 ⇒ 일반직 전문경력관 1명으로 전환

나.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조정(안 제3조 관련 【별표 1】)

- 일반직 93% 이상 ⇒ 99% 이상, 기능직 6% 이내를 삭제함

다.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안 제3조 관련 【별표 2】)

- 기능직 공무원 정원채정기준은 삭제하고

일반직 8급 비율 25% 이내 $\Rightarrow$ 26% 이내,

9급 비율 10% 이상 $\Rightarrow$ 8% 이상으로 변경하고,

전문경력관 비율 1% 이내를 신설함.

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관련 【별표3】)

○ 일반직 계 683명 $\Rightarrow$ 726명, 별정직 계 2명 $\Rightarrow$ 1명으로

기능직 계 42명은 삭제함.

5.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안전행정부)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가 2012년 12월 11일 개정되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 법 시행일(2013년 12월 12일)전에 상위법에 맞도록 경력직 공무원 중 기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편입하고,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 편입에 따른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의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 중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을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으로 한다.

제5조 중 “직렬별 정원은”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1 】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별정직 · 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비 고

-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 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 2. 읍 · 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별 표 2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6% 이내	28% 이내	30% 이내	26% 이내	8% 이상	1% 이내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100%	-	-	-

비 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별 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754	458	12	85	13	89	97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26	454	12	61	13	89	97
3급	1	1					
4급	5	4		1			
5급	37	23	3	1	1	3	6
6급이하 계	682	426	9	58	12	86	91
전문경력관 계	1			1			
연구직 계	2	2					
연 구 관							
연 구 사	2	2					
지도직 계	24			24			
지 도 관	2			2			
지 도 사	22			22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계	1	1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와 같이 한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 ----- -----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 별 표 1 】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table><tr><th>구분</th><th>일 반 직</th><th>기능직·고용직</th><th>별정직·정무직</th></tr><tr><td>비율</td><td>93% 이상</td><td>6% 이내</td><td>1% 이내</td></tr></table>	구분	일 반 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3% 이상	6% 이내	1% 이내	【 별 표 1 】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table><tr><th>구 분</th><th>일 반 직</th><th>별정직·정무직</th></tr><tr><td>비 율</td><td>99% 이상</td><td>1% 이내</td></tr></table>	구 분	일 반 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구분	일 반 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3% 이상	6% 이내	1% 이내												
구 분	일 반 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현행								개정안							
【 별표 3 】								【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및 그출장소	면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및 그출장소	면
총 계	754	458	12	85	13	89	97	총 계	754	458	12	85	13	89	97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83	435	8	57	9	86	88	일반직 계	726	454	12	61	13	89	97
3급	1	1						3급	1	1					
4급	5	4		1				4급	5	4		1			
5급	37	23	3	1	1	3	6	5급	37	23	3	1	1	3	6
6급이하 계	640	407	5	55	8	83	82	6급이하 계	682	426	9	58	12	86	91
연구직 계	2	2						전문경력관 계	1			1			
연구관								연구직 계	2	2					
연구사	2	2						연구관							
지도직 계	24			24				연구사	2	2					
지도관	2			2				지도직 계	24			24			
지도사	22			22				지도관	2			2			
별정직 계	2	1		1				지도사	22			22			
5급 상당								별정직 계	1	1					
6급상당이하 계	2	1		1				5급 상당							
기능직 계	42	19	4	3	4	3	9	6급상당이하 계	1	1					

붙임 3)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전문개정 2008.12.31]

□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안전행정부)】

□ 주요내용

○ 기능직 전환

- 직종개편 시행일 :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로 임용
- 직종개편 시행 이후 :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유사직렬로 전직임용

○ 별정직 전환

- 비서·비서관 등 보좌업무 : 별정직 존치
- 그 외 직위 :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경력관 또는 신설·유사직렬로 전환

○ 계약직 전환

- 계약직 :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

□ 전환 개요

구분	업무성격	전환개요
기능직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있는 경우	⇒ 관리운영직군 임용 → 전직시험 거쳐 유사직렬로 전직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는 경우	⇒ 직렬을 신설하여 전환
별정직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있는 경우	⇒ 해당직렬로 임용, 전담직위 지정 → 전담직위평가 후 해제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으며 특정 전문분야 담당, 순환전보 곤란	⇒ 전문경력관 지정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으며 상당인원 재직, 계급제적 성격	⇒ 직렬을 신설하여 전환
	임기가 있는 직위	⇒ 임기제 일반직
계약직	비서관·비서, 정무특보, 국제관계대사 등 정무직 보조·보좌인력	⇒ 별정직
	그 외 계약직	⇒ 임기제 일반직